

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
----------	--------

발의일자	2016. 11. .
발 의 자	강철우의원외4명

1. 제안이유

○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(안 제1조)

나.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3조)

-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시책 마련 및 추진, 관계법령의 책무 성실 이행

다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
-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·시행: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,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

라. 복지단체 보호·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5조)

마.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(안 제6조)

바.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시행을 명시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: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, 복지정책과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16. . . ~ . . .

(나) 예고결과:

(4) 비용추계서: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종합복지서비스”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·재활·의료·교육·직업훈련·고용·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복지단체”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
2.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3.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
5.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
6.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복지단체의 보호·육성)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·교육기관·복지시설·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·홍보)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예산지원)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5.11.21.] 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